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3. 11 선고 2019가단12909 판결 [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2. 5

판결 선고 2020. 3. 1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지층 소재 B의 정육점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기간 2019. 6.7.까리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그 무렵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2019. 7.경 전차받은 위 정육점 부분을 피고 회사에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위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전대차계약 당시 E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그가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상당의부당이득을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2억 원을 2017. 6.

9. 피고 회사에 그대로 다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 C가 위 2억 원을 타에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더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피고 회사에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전경호